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의안 번호	3206
----------	------

2022. 6. 13.
도시계획관리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22년 5월 27일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8회 정례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22.6.13. 상정·의결)

II. 제안설명 요지(최진석 도시계획국장)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2. 1. 28.)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감염병관리시설 등 의료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의료시설 용적률 완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합의료시설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제24항)
 - 시행령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120퍼

센트 이하로 정함(안 제55조제24항1호)

-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부지(도시계획시설 대학 내 의료시설 포함)에 공공이 필요한 의료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대학은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으로 고시)하는 경우 조례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함(안 제55조제24항2호)

Ⅲ. 검토보고 요지(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이 개정조례안은 감염병관리시설 등 공공이 필요한 의료시설 설치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서(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제6호) 위임한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규정하고, 더불어,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에 공공 필요 의료시설 설치시 조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시행령 개정 및 이 개정조례안은, '03년부터 감염병 발생이 반복되어 오고¹⁾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²⁾에 따른 시설기준 강화로 의료시설 면적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의료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시설면적 증가 수요에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코자 한 것으로 입법 취지가 파악됨.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17.2.3.)

- 음압격리병실 의무 신설 : 300병상당 종합병원 1개 설치, 추가 100병상당 1개 확충
- 입원실 기준 강화 : 입원실 병상(6개→4개), 병실면적(병상당 4.3㎡→6.3㎡)
- 중환자실 기준 강화 : 병실면적(병상당 10㎡→15㎡), 병상간 거리(2m, 벽에서 1.2m)

※ 서울시 56개 종합병원 중 4개소 시설개선 완료(강북삼성, 강동성심, 부민, 명지성모)

1) 사스('03), 신종인플루엔자('09), 메르스('15), 에볼라('18), 코로나19('20) 등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시 시행령 용적률 완화(시행령 위임)”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22.1.) 의료시설 부지에 필요감염병 관리시설을²⁾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완화 범위는 용도지역별 최대용적률의 120%의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한 가운데(시행령 제85조제3항제6호), 이 개정조례안은 용적률 완화 범위를 법령의 최대 허용범위로(120%) 정하는 것으로서, 이 규정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은(조례 용적률 초과분) 필요감염병 관리시설 설치에 사용되어야 함(시행령 제85조제3항제6호나목).

시행령 개정전	시행령 개정후(‘22.1.28.)
<p>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③ ----- ----- ----- -----.</p> <p>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 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p> <p>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p>

2)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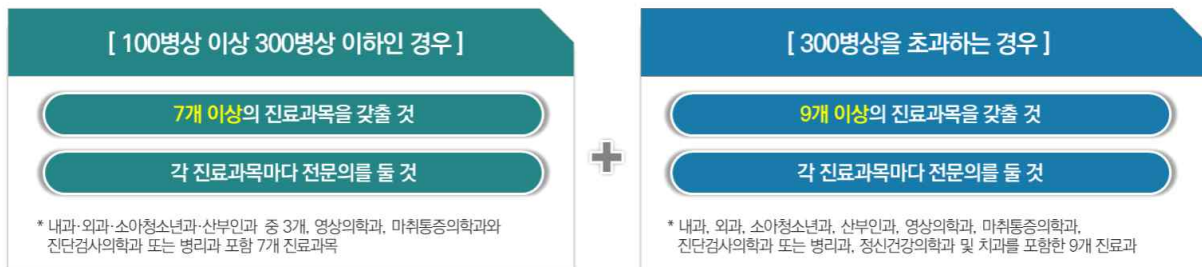
도시계획 조례(현행)	도시계획 조례(개정안)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신설>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의한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공공필요 의료시설 설치시 조례 용적률 완화”

- 시행령 위임사항과 별도로,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에³⁾ 한하여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완화를 가능토록 하되, 이에 따른 증가용적률의 1/2 이상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공공 필요 의료시설을 설치토록 함.

3) 종합의료시설(도시계획시설) : 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이상이자 7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

※ 종합병원의 요건(의료법 제3조의3) :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것



도시계획 조례(현행)	도시계획 조례(개정안)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신설>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 부지(도시계획시설 대학 내 의료시설 포함)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는 경우(대학은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으로 고시)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고, 이 경우 완화 받는 용적률의 1/2이상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공공이 필요한 의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시행령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의(음압병상 등) 용적률 완화가 가능함에도 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은, 시행령의 경우 증가용적률 전체를 감염병관리시설에 사용해야 해서 감염병관리시설의 '고비용-저수익' 성격을 감안시 입법 실효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을 통해, 조례 증가용적률 50%는 공공 필요 의료시설을 설치하고(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나머지는 병원 선호시설을 설치케 하여 입법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 감염병관리시설을 비롯해 응급의료시설·중환자실 등 수익성이 낮아 병원은 선호하지 않으나 공공에 필요한 의료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공공필요 의료시설 인정범위 예시 (자료: 시설계획과)

구분	공공필요 의료시설		
	확대 감염병관리시설		공공보건 의료시설
기준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도시건축공동위 심의를 통해 인정)		
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36조제3항	공공의료 전문가(서울시 공공의료재단 등) 자문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국가필수 의료보장 분야 (보건복지부, '18.10)
대상 (예시)	- 감염병관리시설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 전환형 격리병상 - 음악시설을 갖춘 분만·산모·신생아 치료 및 수술시설 - 호흡기 전담 외래진료실	- 필수중증 의료시설 : 응급의료센터, 외상센터, 심내혈관 등 - 산모·어린이 의료시설 : 고위험산모 집중치료센터, 모자의료센터,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등 - 장애인·재활 의료시설 : 어린이 재활병원, 지역사회 건강센터(치매 전문병동) 등

“입법 대상과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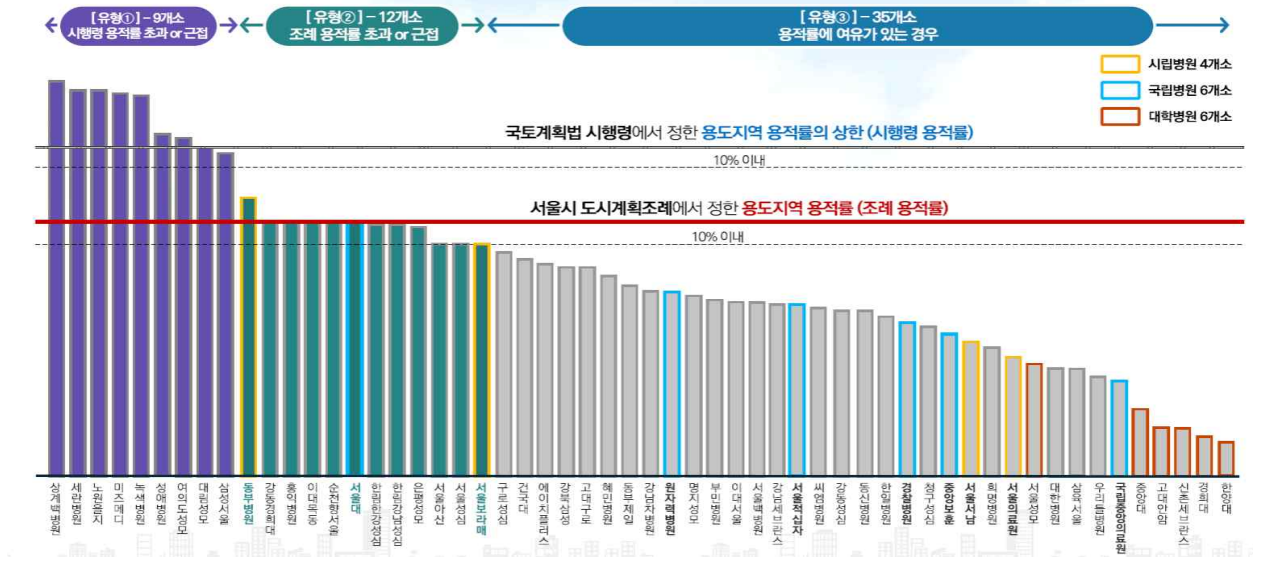
- 서울시 종합병원은 총 56개소이고(검토보고서 붙임1) 이 중 24개소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가운데,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근접한 종합병원은 도시계획시설 10개소, 비도시계획시설⁴⁾ 11개소 등 총 21개소로서 이번 입법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 서울시 종합병원 현황				
종합병원	도시계획시설			非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대학시설內	공항시설內	
56 (용적률 초과·근접 병원 21개소)	17(10개소)	6(-) 경희대, 한양대, 신촌세브란스(연세대), 중앙대, 고대안암, 서울성모(카톨릭대)	1(-) 우리들 병원	32(11개소)
시행령 용적률 초과·근접(9)	상계백, 노원을지, 여의도성모, 삼성서울	-	-	세란, 대림성모, 미즈메디, 성애, 녹색
조례 용적률 초과·근접(12)	강동경희대, 이대목동, 순천향대부속, 은평성모, 서울아산, 서울보라매(시립)			서울동부(시립), 홍익, 서울대(국립), 서울성심, 한강성심, 강남성심

· 종합의료시설 : 종합병원 또는 300병상·7개 진료과목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도시계획시설규칙)
· 종합병원 : 100병상, 7개 진료과목 이상(의료법)

4)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의 지구단위계획에 한해 적용하는 사안으로, 비도시계획시설의 조례 용적률 완화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동시에 수행해야 함

- 좀 더 살펴보면, 21개소 중 9개소는 시행령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근접하여 시설 확대를 위해서는 용도지역 상향이 불가피하므로, 사실상 이번 입법 대상은 조례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근접한 12개 병원이라고 할 수 있겠음.



- 서울시는 이상 21개소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과(9개소) 조례 용적률을 완화할(12개소) 경우, 종합병원 2개소 이상의 공공필요 의료시설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함5).

구분	면적	용도지역		용적률			사회적 필요 의료시설			
		기정	변경(안)	조례(현행)	완화	증가	용적률	연면적		
유형 ① 10개 중 9개 용도지역 상향	상계백병원*	6,743.2	제3종일반주거	준주거	(374%)	391%	17%	584 m ²	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세란병원	1,571.9	제3종일반주거	준주거	(359%)	386%	27%	13.7%	215 m ²	
	미즈메디	2,076.4	제3종일반주거	준주거	(357%)	386%	29%	14.3%	298 m ²	
	여의도성모	12,292.0	제3종일반주거	준주거	(310%)	370%	60%	30.0%	3,688 m ²	
	대림성모	2,988.0	제3종일반주거	준주거	(299%)	366%	67%	33.7%	1,006 m ²	
	강남세브란스	22,121.0	제3종일반주거	-	(297%)	-	-	-	-	용적률 완화 완료
	노원엘지	6,722.8	제2종일반주거	준주거	(299%)	366%	67%	33.7%	2,263 m ²	
	녹색병원	4,903.4	제2종일반주거	준주거	(293%)	364%	71%	35.7%	1,749 m ²	
	성애병원	3,186.0	제2종일반주거	준주거	(260%)	353%	93%	46.7%	1,487 m ²	
	삼성서울*	206,732.0	자연녹지	제2종일반주거	(99%)	166%	67%	33.7%	3,370 m ²	1만m ² 상향 가점
유형 ② 12개 중 12개 조례 용적률 1.2배 완화	서울성신*	999.9	용도지역 혼재	-	536%	643%	107%	53.6%	536 m ²	
	한강성심	2,003.0	준주거	-	400%	480%	80%	40%	801 m ²	
	은평성모	21,612.6	준주거	-	400%	480%	80%	40%	8,645 m ²	
	홍익병원	854.6	제3종일반주거	-	250%	300%	50%	25%	214 m ²	
	순천향대부속*	16,265.0	제3종일반주거	-	250%	300%	50%	25%	4,066 m ²	
	강동경희대*	15,476.6	제3종일반주거	-	250%	300%	50%	25%	3,869 m ²	
	강남성심	8,861.0	제3종일반주거	-	250%	300%	50%	25%	2,215 m ²	
	서울아산*	138,845.3	제3종일반주거	-	250%	300%	50%	25%	34,711 m ²	
	서울동부**	5,634.4	제2종일반주거	-	250%	300%	50%	25%	1,409 m ²	
	서울보리매**	24,573.0	제2종일반주거	-	250%	300%	50%	25%	6,143 m ²	
	이대목동*	27,805.4	제2종일반주거	-	200%	240%	40%	20%	5,561 m ²	
	서울대*	80,858.6	제2종일반주거	-	200%	240%	40%	20%	16,172 m ²	
합계								99,002 m ²		

- 5) 용적률 부족병원 21개소를 대상으로, 완화받는 용적률의 1/2을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최대 확보할 경우 연면적 약 99,000m²에 해당되는 시설 확충 전망(서울시내 종합병원 지상층 평균 연면적 약 41,000m²을 대입해보면, 2배 이상 규모)

“주요 쟁점사항”

- 시설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용도지역 상향과 이에 상응한 기부채납을(토지 또는 건축물) 요하게 되는데,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이 불가피한 병원을 제외하고는(9개소) 조례 용적률 완화를 통해 공공 필요 의료시설을 확충하되, 기부채납 대신 해당 병원이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한 의료용도로 시설을 운영토록 하고, 필요시 감염병관리시설(시민건강국)⁶⁾ 또는 긴급구조지원시설로(소방재난본부)⁷⁾ 우선 동원되도록 추진 중임.
- 이 사안은, 의료시설 규모 확대에 용도지역 상향 수단이 있음에도 조례 용적률 완화가 필요한지, 그리고, 용적률 완화에 따르는 공공 기여에 있어 공공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기부채납과 달리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방식이 타당한지 등 크게 2가지 쟁점이 있음.
 - 우선 조례 용적률 완화 필요성을 살펴보면, 의료시설만 용도지역을 상향할 경우에는 점적 토지이용(spot-zoning) 문제가 우려되고, 용적률 상승 폭이 커서 과도한 개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⁸⁾,

6) 서울특별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과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46조(긴급구조) ① 법 제50조에 따라 시 소방재난본부에 설치된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구조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항의 구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지정된 의료기관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토지이용 질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의료시설의 필요·적정한 면적 증가를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이해됨.

- 공공기여에 있어서는,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시설은 통상 공공이 인수·관리하게 되나, 의료시설은 전문성·효율성 측면에서 해당 병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해당 병원이 운영토록 하는 것으로 이해됨.

공공이 인수·관리하지 않고 민간이 공공기여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만큼, 공공필요 의료시설이 취지와 계획에 맞게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관리방안 및 변형 운영시 조치방안 등 공공성 이행 담보방안이 면밀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즉, 이 조례가 개정되면, 공공필요 의료시설의 개념과 범위, 용적률 완화 방법 및 시설 운영방안, 변형 운영시 조치방안 등의 상세한 지침 마련이 요구됨⁹⁾.

“입법 타당성 및 의미”

- 이 개정조례안은 감염병관리시설 등 공공이 필요한 의료시설 설치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의료 대응 강화 및 사회적 의료 서비스 안정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입법 취지에 맞게 시설이 꾸준히 운영되도록, 공공필요 의

8) 이 외에도, 용도지역 상향 조건에 맞지 않은 의료시설들도 있어 용적률 완화 필요

9) 관련하여, 서울시는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수립·운영기준’을 준비 중이고(조례 용적률 완화 관련), 대학 내 병원은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을 개정하여(5차 개정 준비 중) 해당 사항을 마련할 계획임.

료시설의 범위 및 운영방안, 그리고, 필요시 동원방안 등이 의료 기관 등과 충분히 협의되어 상세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이 개정조례안의 조례 용적률 완화에 대한 공공기여 방식은, 기부채납(공공이 소유권을 이전받아 시설 운영)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이 직접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새로 마련하는 것으로, 공공기여 유형을 다각화하여 그 운영의 폭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사료되며,

의료시설 외에도, 민간의 공공서비스 직접 제공이 바람직한 시설들에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용적률 혜택만 받고 시설은 사유화하는 가능성도 있으므로, 공공필요시설 운영방안과 공공의 감독·관리방안이 면밀히 마련될 필요가 있고, 사유화 등 변형 운영되는 경우 조치방안도 엄격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의한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 부지(도시계획시설 대학 내 의료시설 포함)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는 경우(대학은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으로 고시)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고, 이 경우 완화 받는 용적률의 1/2이상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공공이 필요한 의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③ (생략) <u><신설></u></p>	<p>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의한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u> <u>2.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 부지(도시계획시설 대학 내 의료시설 포함)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는 경우(대학은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으로 고시)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고, 이 경우 완화 받는 용적률의 1/2이상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공공이 필요한 의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u>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06
----------	------

제출년월일 : 2022년 5월 2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2. 1. 28.)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감염병관리시설 등 의료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의료시설 용적률 완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합의료시설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제24항)

- 1) 시행령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정함(안 제55조제24항1호)
- 2)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부지(도시계획시설 대학 내 의료시설 포함)에 공공이 필요한 의료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대학은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으로 고시)하는 경우 조례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함(안 제55조제24항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2. 3. 21.~4. 11.) 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의한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 부지(도시계획시설 대학 내 의료시설 포함)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는 경우(대학은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으로 고시)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고, 이 경우 완화 받는 용적률의 1/2이상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공공이 필요한 의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p> <p>① ~ ③ (생략)</p> <p><u><신설></u></p>	<p>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u></p> <p><u>1.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의한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u></p> <p><u>2.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 부지(도시계획시설 대학 내 의료시설 포함)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하는 경우(대학은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으로 고시)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고, 이 경우 완화받는 용적률의 1/2이상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공공이 필요한 의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u></p>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의료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고자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으로 수반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홍명순(02-2133-8411)